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을 중심으로)

1.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 (동법시행령 제10조)

-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제품에 폐기물 부담금 부과
 -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유독물 제품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1차 플라스틱 제품, 건축용, 포장용, 기계 장비 조립용, 기타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인형·장난감·오락용품, 사무·회화용품, 가구제품, 끈·로프, 라이터, 칫솔, 면도기(전기식 제외)
-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제품·재료·용기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한 경우, 연간 매출액 10억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플라스틱 제품, 수입업자가 미화 9천불 미만의 플라스틱제품을 수입한 경우, 생산자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2.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 이행

- 재활용 의무 생산자(동법시행령 제19조)

| 업종 | 재활용 의무생산자 | 규모 |
|----------------------|--|---------------------------------|
| 음식료품류, 의약품류 농수축산물 | EPS, PSP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EPS, PSP 포장재를 이용한 농수축산물(상표 부착 제품) 출하 및 수입, 판매업자 | 연간매출 10억원, 수입액 3억원 이상 사업자 |
| 도시락용기, 반침접시 | PSP 포장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
| 가전완충재를 사용한 전자제품 | 발포합성수지(EPS, EPP, EPE)를 완충포장재로 한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 | |
| 농수축산물 상자 | EPS 포장상자 제조업자 | |

- 재활용 방법의 선택
재활용 의무량 이행을 위해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사업자에게 재활용 위탁,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의무량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이 재활용 의무를 대행

3. 재활용사업자 (동법시행령 제20조)

-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품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할 수 있는 자
 -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 재활용 지정 사업자
- 재활용 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4.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폐 발포폴리스티렌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성형제품의 제조, 내화제품 또는 섬유 코팅제품의 제조,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 폐 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성형제품 제조, 유류 제조, 고형연료제품 제조, 에너지 회수 기준에 적합한 재활용,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5. 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총량의 산정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3조)

- 재활용 의무 총량 = (전전년도의 총 재활용량 + 전년도의 재활용 의무 총량) / 2 + (전전년도의 총 출고량 - 전전년도의 총 재활용량) x 0.1 x 재활용 여건 계수
- 사업자별 재활용 의무량 = 총 출고량 중 사업자의 출고량 비율 x 재활용 의무총량

6. 재활용 비용 (동법시행령 제27조)

| 품목 | 종별 및 규격 | 재활용 기준비용(원/kg) |
|---|---|----------------|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 PE, PP, PS, PSP, ABS, 폴리아크릴릭 등 단일재질 포장재 | 327 |
| | PET 단일재질 포장재 | 178 |
| | EPS(발포폴리스티렌) 단일재질포장재 | 317 |
| | PVC 단일, 복합재질 포장재 | 981 |
| | 합성수지 복합재질 포장재 | 467 |
| 전자제품 완충재, 농수축산물 상자 | 발포합성수지 단일, 복합 재질 포장재 | 317 |

7.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동법시행령 제28조)

-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 단위비용의 1.15~1.3배의 가산 금액을 곱하여 산정

| 재활용의무량 미이행율(%) | 5% 이하 | 5%초과 15% 이하 | 15% 초과 30% 이하 | 30% 초과 |
|----------------|---------|-------------|---------------|---------|
| 부과금 | 115/100 | 120/100 | 125/100 | 130/100 |